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
- 나. 회부일자: 2011년 2월 15일
- 다. 상정일자: 2011년 2월 23일 , 원안가결
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

2. 제안 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섭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」 제3조의4(교습과정별 시설기준) 제1항 및 별표3과 관련, 학원의 시설규모에서 보습학원에 재학생만 받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
가. 주요내용

-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함
(안 제3조의4제1항 및 안 별표3)

3. 전문위원 검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성용)
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(별표1)에 의하면 학원의 교습과정을 교습분야와 계열로 구분하고 있으며, 제8조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단위 시설기준에 대해서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“교습대상”에 대하여는 조례에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,
- 동 조례 제3조의4 제1항 「별표3」 에서 보습학원의 교습과정을 “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 교습”으로 정의하여 보습학원의 수강생 자격을 재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임.

-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은 동 조례에서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(서울고등법원 2009누36141, 2010.7.16.)하였고,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2010.7.30. 조례로 교습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동 조례의 개정을 권고한 상태임.
- 따라서 법원의 판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 및 상위법에 근거하여 보습학원의 교습대상을 재학생으로만 제한한 부분을 삭제하는 동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

가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나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원의 시설·설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설·설비 기준에 의하여 설립·등록된 학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·등록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 3]

학원의 시설규모(제3조의4제1항 관련)

종 류	분 야	계 열	교습과정	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	비 고
학교교과 교습학원	입시, 검정, 보습	보통교과	입 시	660㎡ 이상	
			검정고시	480㎡ 이상	
			보습(보통교과목 보완교습)	70㎡ 이상	
	국제화	외 국 어	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	150㎡ 이상	
	예 능	예 능	음악, 미술, 무용	별표4와 같음	
	독서실	독서실(유아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 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)		120㎡ 이상	
	특수교육	특수교육	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	별표4와 같음	
기 타	기 타	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 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	70㎡ 이상		
평생직업 교육학원	직업기술	산업기반기술	영제3조의2 별표1참조	별표4와 같음	
		산업응용기술			
		산업서비스			
		일반서비스			
		컴퓨터			
		문화관광			
		간호보조기술			
	경영· 사무·관리	금융, 유통, 비서, 경리, 부기, 주산,속셈,속독	70㎡ 이상		
	국 제 화	국 제	성인대상 어학	150㎡ 이상	
			통역, 번역	70㎡ 이상	
인문사회	인문사회	행정, 경영, 회계, 통계	70㎡ 이상		
		대학편입, 성인고시	150㎡ 이상		
기 예	기 예	국악, 전통무용, 서예, 꽃꽂이, 실용음악, 성악, 현대무용, 비독, 웅변	별표4와 같음		
독서실	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 는 독서실		120㎡ 이상		

※비 고 :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(실험·실습·실기를 요하는 음악, 미술, 컴퓨터, 체능(무용포함),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)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 3] 학원의 시설규모(제3조의4 제1항 관련)

종류	분야	계열	교수과정	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	비고		
학교교과교육원	입시, 검정, 보습	보통교과	입시	660㎡ 이상			
			검정고시	480㎡ 이상			
			보습(재학생의 보통교과목 보완교습)	70㎡ 이상			
	국제화	외국어	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	150㎡ 이상			
	예능	예능	음악, 미술, 무용	별표4와 같음			
	독서실	독서실(유아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)		120㎡ 이상			
	특수교육	특수교육	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	별표4와 같음			
기타	기타	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	70㎡ 이상				
평생직업교육원	직업기술	산업기초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	영제3조의2 별표1참조	별표4와 같음			
			경영사무원	금융, 유통, 비서, 경리, 부기, 주산, 속셈, 속독	70㎡ 이상		
			국제화	국제	성인대상 어학	150㎡ 이상	
			통역, 번역	70㎡ 이상			
			인문사회	인문사회	행정, 경영, 회계, 통계	70㎡ 이상	
			대학편입, 성인고시	150㎡ 이상			
			기예	기예	국악, 전통무용, 서예, 꽃꽂이, 실용음악, 성악, 현대무용, 바둑, 옹변	별표4와 같음	
	독서실	학교교과교육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		120㎡ 이상			
	※비고 :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(실험·실습·실기를 요하는 음악, 미술, 컴퓨터, 체능(무용포함),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)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.						

[별표 3] 학원의 시설규모(제3조의4 제1항 관련)

종류	분야	계열	교수과정	강의실, 실습실, 열람실	비고		
학교교과교육원	입시, 검정, 보습	보통교과	입시	660㎡ 이상			
			검정고시	480㎡ 이상			
			보습(보통교과목 보완교습)	70㎡ 이상			
	국제화	외국어	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외국어	150㎡ 이상			
	예능	예능	음악, 미술, 무용	별표4와 같음			
	독서실	독서실(유아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)		120㎡ 이상			
	특수교육	특수교육	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치료교육 활동	별표4와 같음			
기타	기타	기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대상으로 교습을 하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	70㎡ 이상				
평생직업교육원	직업기술	산업기초기술 산업응용기술 산업서비스 일반서비스 컴퓨터 문화관광 간호보조기술	영제3조의2 별표1참조	별표4와 같음			
			경영사무원	금융, 유통, 비서, 경리, 부기, 주산, 속셈, 속독	70㎡ 이상		
			국제화	국제	성인대상 어학	150㎡ 이상	
			통역, 번역	70㎡ 이상			
			인문사회	인문사회	행정, 경영, 회계, 통계	70㎡ 이상	
			대학편입, 성인고시	150㎡ 이상			
			기예	기예	국악, 전통무용, 서예, 꽃꽂이, 실용음악, 성악, 현대무용, 바둑, 옹변	별표4와 같음	
	독서실	학교교과교육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		120㎡ 이상			
	※비고 :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과정은 보통 교과목(실험·실습·실기를 요하는 음악, 미술, 컴퓨터, 체능(무용포함), 실용 외국어회화를 제외한다)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.						